

의안번호	2204738
의 퇴 인	강유정 의원
회 답 일	2024. 11. 1.
추계번호	24F4358
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－ 간행물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규정 신설

【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】

I. 재정수반요인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주요내용
1	안 제25조의8 (간행물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)	○ 간행물, 전자출판물, 외국간행물 등 간행물 제작비용이 있는 경우 해당 간행물이 처음으로 소비자에게 제공된 과세연도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제작비용의 5%에 상당하는 금액 공제

II. 미첨부 근거규정 및 상세사유

1. 근거 규정

연번	조·항(조제목)	미첨부 근거 규정
1	안 제25조의8 (간행물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)	제3호: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·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

I. 재정수반요인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주요내용
1	안 제25조의8 (간행물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)	○ 간행물 제작비용이 있는 경우 해당 간행물이 처음으로 소비자에게 제공된 과세연도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 - 공제율: 간행물 제작비용의 5%

II. 미첨부 근거규정 및 상세사유

1. 근거 규정

연번	조·항(조제목)	미첨부 근거 규정
1	안 제25조의8 (간행물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)	제3호: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·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

2. 상세사유

- 개정안은 간행물 제작비용에 대해서도 세액공제 혜택을 부여하려는 것으로, 개정안에 따를 경우 법인세 및 소득세의 감소가 예상됨
- 현행법 제25조의6은 영상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하여 기업규모별로 차등적인 공제율을 적용하여 세액공제를 제공하고 있음
 - 현행 공제율: (기본) 중소기업 10%, 중견기업 7%, 대기업 3%
(추가) 중소기업 15%, 중견·대기업: 10%

- 공제대상에 간행물을 추가하는 안에 따른 재정수입 감소액을 추계하기 위해서는 신규 공제 대상이 되는 간행물 제작비 규모를 추정해야 함
- 그러나 공제대상의 범위의 모호성 및 참고자료의 부재로 개정안에 따른 세수효과를 합리적으로 추계하는 것이 불가능함
 - 개정안에 따라 간행물 제작비용이 공제대상에 추가될 경우, 간행물·전자출판물·외국간행물이 추가적으로 공제받을 것으로 예상되지만, 공제대상이 되는 간행물 및 제작비용의 구체적인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위임하고 있어 분야를 특정하기 어려움
 - 또한 간행물 관련 제작비 통계가 미비하여, 간행물 제작비 규모를 합리적으로 추정하기 어려움
 - 콘텐츠산업 전반에 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의 「콘텐츠산업조사」가 존재하지만, 수록된 통계 항목을 살펴보더라도 각 항목별 제작비를 추정할 수 있는 자료 부재
 - 참고로 출판산업의 분야별 매출 규모는 다음과 같음

[참고] 출판산업 매출액 현황

(단위: 백만원)

중분류	소분류	2020	2021	2022
출판	일반 서적 출판	1,259,334	2,435,555	2,422,886
	교과서 및 학습서적 출판업	2,669,222	2,650,839	2,696,995
	인터넷/모바일 전자출판 제작업	518,663	704,828	831,862
	신문 발행업	2,745,850	2,798,269	2,748,493
	잡지 및 정기간행물 발행업	1,144,811	1,271,117	1,212,557
	정기 광고간행물 발행업	506,115	423,982	370,558
	기타 인쇄물 출판업	213,591	666,678	702,381
	소계	9,057,587	10,951,268	10,985,732
인쇄업	인쇄업	4,300,049	4,476,166	4,694,449
출판 도소매업	서적 및 잡지류 도매업	2,705,937	3,613,578	3,640,034
	서적 및 잡지류 소매업	5,157,462	5,148,584	5,199,224
	소계	7,863,399	8,762,162	8,839,258
온라인 출판 유통업	인터넷/모바일 전자출판 서비스업	372,287	476,564	641,779
출판 임대업	서적 임대업(만화제외)	55,526	31,593	30,483
합계		21,648,849	24,697,753	25,191,702

자료: 문화체육관광부, 「2022년 기준 콘텐츠산업 통계조사」, 2024.3.

- ☐ 이상의 논의를 통해 살펴본 바와 같이 현시점에서 개정안에 따른 수입 감소액을 합리적으로 추계하는 것은 불가능하므로, 개정안은 「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규칙」 제3조제1항제3호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에 해당함

IV. 부대의견

- ☐ 없음

V. 작성자

- ☐ 성명

국회의산정책처	분석관	과장
세제분석2과	장설희	백경엽

- ☐ 대표연락처

성명	전화번호	이메일 주소
장설희	02-6788-4836	shjang@assembly.go.kr